



**어린이 정보(이용하는 초등생 보육 매 시설마다 필요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)**

이용하는 초등생 보육 시설 ①		<input type="checkbox"/> 아동관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동관 분실 <input type="checkbox"/> 초등생 보육시설 : <input type="checkbox"/> 초등생 보육시설 코너 분실		
	후리가나(한자 읽는 법) 아동 성명	생년월일	성별	초등생 보육 시설(변경이 있을 경우)
①		서기      년 월      일	남·여	(변경 전)
②		서기      년 월      일	남·여	(변경 전)
③		서기      년 월      일	남·여	(변경 전)
④		서기      년 월      일	남·여	(변경 전)
⑤		서기      년 월      일	남·여	(변경 전)

**여러 초등생 보육 시설을 이용할 경우 아래 사항을 함께 기입해 주십시오.**

따로 이용하는 초등생 보육 시설 ②		<input type="checkbox"/> 아동관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동관 분실 <input type="checkbox"/> 초등생 보육시설 코너 <input type="checkbox"/> 초등생 보육시설 코너 분실		
	후리가나(한자 읽는 법) 아동 성명	생년월일	성별	초등생 보육 시설(변경이 있을 경우)
①		서기      년 월      일	남·여	(변경 전)
②		서기      년 월      일	남·여	(변경 전)
③		서기      년 월      일	남·여	(변경 전)

**계좌 정보**

초등생 보육료를 자동이체로 설정하셨습니다가?	예 · 아니요
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

**초등생 보육료를 자동이체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에 환급금 입금처를 기입해 주십시오.**

금융기관		지점명	
계좌 번호 (첫번째 칸부터 채워서 기입하십시오)			
계좌 명의			

## 2010년도 세제 개정 전의 부양공제를 적용한 경우의 비과세 취급에 대하여

2010년도 세제 개정에 의하여 연소(年少) 부양공제 및 16~18세 이하(2024년 12월 31일 시점)의 특정 부양공제의 가산 부분이 폐지된 바 있으나, 고베시 방과후 아동 클럽의 감면제도에서는, 이러한 부양공제의 폐지가 없었던 것으로 취급합니다. 따라서, 2024년분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도 재계산을 함으로써 비과세 취급으로서 감면 대상으로 해당될 경우가 있습니다.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양식 앞면의 감면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는 동시에 아래 부양친족 신고서에 18세 이하(2024년 12월 31일 시점) 부양친족을 반드시 기입하고 소득을 알 수 있는 서류(원천징수표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)를 첨부하여 신청해 주십시오.

또한, 부양친족 신고서에 기입되어있지 않은 경우 재계산을 못하게 되어, 비과세 취급으로서 감면 결정을 못하게 되므로, 미리 양해 바랍니다.

18세 이하 부양친족 수	명
그 중 16세 미만 부양친족 수	명
그 중 16세~18세 부양친족 수	명

### 부양친족 신고서

고베시장 앞

신청일: 서기

년

월

일

신청자	후리가나(한자 읽은 법)	
	성명	

2024년 12월 31일 시점에서 18세 이하(2006년 1월 1일~2024년 12월 31일 생) 가구 구성원

후리가나(한자 읽은 법)	관계	생년월일	성별
성명			
	자	서기           년   월   일	남·여
	자	서기           년   월   일	남·여
	자	서기           년   월   일	남·여
	자	서기           년   월   일	남·여
	자	서기           년   월   일	남·여